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5. 12. 16, 법률 제21202호)
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을 위한 공고 및 요청(안 제3조~제4조)

다.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을 위한 검토, 심의·의결(안 제5조~제7조)

라. 지원기관 및 재검토기한(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songseok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 044-203-4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재검토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탄소철강기술"이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법 제10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재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선정·재검토 기준, 추진 일정, 요청 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책 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요청)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정·재검토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재검토 요청의 이유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선정·재검토 요청 기술 관련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재검토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제5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사전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 철강기술을 선정·재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 및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기 위해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재검토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한 조정위원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결과를 반영한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 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재검토안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제외)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제외한다.

제8조(지원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
획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요청의 접수 업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